

순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2023. 12. 29.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본원은 ‘순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라 명한다.
- 제 3 조 (위치) 본원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85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 제 4 조 (수업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 제 5 조 (학 기) 본원의 교육과정 학기는 년 2학기로 한다.
1.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6 조 (휴업일 등)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① 휴업일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방학
6. 기타 휴일
 - ①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② 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은 휴업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 제 7 조 (학급편제) 본원은 관할청의 배정 학급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 제 8 조 (원아정원) 본원의 원아 정원은 전라북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용지표에 근거한다.

제 4 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 제 9 조 (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3~5세 누리과정」 이 제시하는 5개 영역으로 한다.
- 제 10 조 (수업일수 등) 본 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업일수의 10분의 1
- 휴업 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 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당해연도 지침에 따른다. (※근거: 당해연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및 기타사항은 관할청의 당해연도 지침에 의함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단,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사전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유의사항
 -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미인정 결석 처리 >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제 11 조 (수업 운영 방법) 본 원은 아래 1호와 2호로 운영한다.

- 교육 과정: 1일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수업과정
- 방과후 과정: 1일 4시간 이상의 수업과정
(단, 학부모의 요구와 제반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입학 · 재입학 · 면제 · 유예 · 재취학 · 휴학 및 복학 · 전입학 및 전출 · 퇴학 및 자퇴 · 수료 및 졸업

제 12 조 (입학 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 13 조 (입학 결정)

- 본 원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당해 학년도 유아모집 선발기준에 따른다.
- 3월 초 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할 수
있다. 단, 다음 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 업무 개시 전까지로 제한한다.

제 14 조 (재입학) 본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다.

제 15 조 (면제, 유예, 재취학)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정원외학적
관리할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유아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 자 할 때 재취학할 수 있다.

제 16 조 (휴학 및 복학) 원장의 허가를 받아 학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전입학 및 전출)

1.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며,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처리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①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 전입일은 월요일로 처리

②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의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2. 학년도 종료 시점(2월 말)을 기준으로 전 · 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기재하고 2월 말 기준 전출, 3월2일 기준 전입 처리한다.

3. 졸업 · 수료식 이후 전 · 출입이 발생할 경우 전출교의 수료 및 졸업은 삭제하고 전입교에서 수료 및 졸업으로 처리한다.

4. 전 · 출입 시 학적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부모가 해당 사항을 유치원에 알리도록 사전 안내한다.

5. 전입학 및 전출하고자 할 때 원장은 전입학 및 전출을 허가한다. 단, 전입학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 18 조 (퇴학 및 자퇴)

1.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①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③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원에서 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하는 경우 유치원장은 자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다.

제 19 조 (수료 및 졸업)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1.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3. 비상재해, 감염병, 그 밖의 긴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범위 안에서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 20 조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감독청과 협의·결정하고,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와 협의·결정하며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7 장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제 21 조 (교육 3주체의 책무)

1. 원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 라 한다), 유아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유아와 보호자는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고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치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원장은 유아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2 조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 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6.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7.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8.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9. 그 밖에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 23 조 (조언 및 상담)

1.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유아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유아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원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②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③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8.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의 및 훈육)

1.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유아의 행동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을 할 수 있다.
3.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과 교원은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원장과 교원은 제1항~제3항에 따른 주의 또는 제23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조언으로 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5.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6.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8.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①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③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 공개의 우려가 있거나 교육활동 침해소지가 있는 물품
9. 원장과 교원은 다른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아의 질병 및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유아의 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 조 (보상) 원장과 교원은 유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26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7 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의제기)

1.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9 조 (기타)

1.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위협된 행동을 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이동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교육활동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자리로 이동
 - ② 교실 외 지정된 다른 장소로 이동
 - ③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알린다.
2.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관계법령, 관할청의 지침을 따른다.

제 8 장 규칙 개정

제 30 조 (규칙 개정) 본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